

환경오염물질 관리 규정

문서관리번호	DS-환오-221201
담당자(부서)	임종만(정보사업부)

주식회사 다솜에스앤씨

제정 및 개정 이력

일자	사유
2022.05.01	최초 제정
2023.05.01	목적 문구수정(환경오염 문구 추가)
2024.09.18	반복되는 회사이름 문구 일괄 정리하여 가독성 개선

(시행일) 본 지침은 등록된 제정 및 개정 일자 이후 즉시 시행한다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(주)다솜에스앤씨(이하 회사)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은 회사의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,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,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,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각 사업장에 적용한다.

제 3 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"관리"란 모든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지칭한다.
2. "담당부서"란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경영지원부서를 지칭한다.
3. "환경기술인"이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자를 지칭한다.

제 4 조(방지시설) 회사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하여 그 시설에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.

제 5 조(환경기술인)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또는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세부 조항은 관련법령을 따른다.

제 6 조(환경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 사항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내용

-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·개선에 관한 사항
- ②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사항
- ③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, 보존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지시하는 사항

2. 준수사항

-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, 자가측정 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온실가스) 환경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 관리 및 자가측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.

제 8 조(대기오염물질) 대기환경보전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환경부령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폐수처리) 물환경보전법 상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한다.

제 10 조(유해화학물질) 화학물질관리법 제 3 장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, 사고예방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.